

••• 2020/12/7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법인이 비사업용투자 등과 개인이 일반부동산 양도소득이 예정신구납부 비교

구분	법인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	일반개인 (양도소득)	사업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
근거규정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69조
과세개념	과세특례	예정신고	예정신고
대상	비사업용부동산(주택, 농지, 임 야. 목장용지 등)	모든 부동산 등(토지, 건물, 주택 등)해당 • 비사업용 10% 추가	부동산매매업(개인사업자)의 모든 부동산 등 • 비사업용은 10% 추가
세율	일반법인세(10%, 20%)+차익 ×10% 추가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신고납부	1년간 여러 건 통합결산신고 등 (차익⊕, 차손⊖ 등 통합)	부동산매매차익, 차손을 매매월말부터 2개월 내 예정 신고납부 (건별이며 연속 합산)	매매차익. 차손을 매매월말부터 2달 내 예정신고납부함(각 건별)
예정신고 여부와 이유	예정신고 없음 (법인이므로 1년 결산 확정신고 만 이행) ① 법인. 계속기업의 원칙. ② 이익과 손실의 통합손익합 산 등 ③ 소득원천징수 안됨	① 계속성 없음 ② 대부분 차익으로 추정	2달내 예정신고 ① 계속성 부족 ② 손실가능성 있음 ③ 배당 등 원천징수와 일맥상 통

고객 담당자 :